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철성 의원(찬성자 : 22명)

나. 의안번호 : 제 2953 호

다. 발의일자 : 2025. 8. 11.

라. 회부일자 : 2025. 8. 14.

2. 제안이유

- 물순환의 범위를 빗물에서 유출지하수까지 확장하여 물순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관련법에 맞춰 용어를 정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련법에 맞춰 용어를 정리 함(안 제2조제4호).

나. 물순환 범위를 유출지하수까지 확장하고자 관련 내용을 추가함(안 제8조제2항4호, 제9조1항, 제36조 본문, 제36조제1호에서 제3호, 제37조 본문, 제37조제2호, 제37조제4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지하수법」

나. 예산조치 : 원안 참조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5. 08. 20.~08. 24.) 결과 : 의견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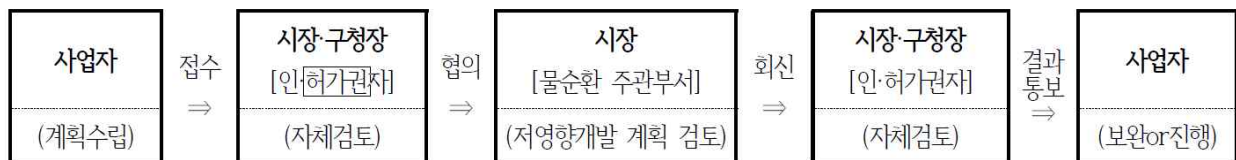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이하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순환의 범위를 유출지하수까지 확장하여 물순환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관련 상위법에 맞춰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운영 현황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조례 제8조¹⁾ 및 제9조²⁾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저영향개발이 될 수 있도록 빗물의 표면 유출을 최소화하는 등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물관리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토록 한 제도임.



[그림 1]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절차

- 1)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제8조(저영향개발 사전협의) ① 시장은 저영향개발 계획 수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 2)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제9조(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허가권자는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물순환 관리 주관부서에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단, 건축연면적의 변경, 10퍼센트이내의 건축면적 변경(증축·개축·재축을 포함한다)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없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 최근 5년간(2020.1.~2024.9.)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총 219건, 자치구가 총 1,527건의 사전협의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약 59,103.4 m^3 /hr의 빗물관리가 가능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표 1] 서울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운영 현황(1만 m^2 이상)

연도	사전협의 건수	빗물분담량(m^3 /hr)	비고
계	219	41,679	
2024.9	38	8,364	
2023	48	9,999	
2022	31	6,195	
2021	48	8,172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자문을 서면2회로 대체
2020	54	8,949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자문을 서면2회로 대체

[표 2] 자치구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운영 현황(1만 m^2 미만)

연번	자치구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	
		건수	빗물 분담량 (m^3 /hr)	건수	빗물 분담량 (m^3 /hr)	건수	빗물 분담량 (m^3 /hr)	건수	빗물 분담량 (m^3 /hr)	건수	빗물 분담량 (m^3 /hr)
	계	459	4,163.9	460	4,941.7	248	2,177.6	221	4,137.7	139	2,003.5
1	종로구	17	176.0	13	42.90	-	-	5	88.3	1	35.9
2	중구	1	74.7	2	33.1	1	2.2	1	1.6	-	-
3	용산구	17	113.8	19	742.3	24	127.9	11	204.6	2	43.2
4	성동구	35	216.9	34	268.6	34	278	2	8.9	3	10.5
5	광진구	11	99.1	12	80.6	3	12.5	2	16	2	13.6
6	동대문구	7	90.8	11	91.6	15	70.4	1	683.4	3	436.1
7	종랑구	26	352.3	43	275.4	34	131.3	16	106.5	4	13.8
8	성북구	20	187.6	17	175.1	11	130.4	12	153.7	3	47.1
9	강북구	27	187.4	29	617.6	24	176.9	14	211.1	8	34.4
10	도봉구	5	26.3	-	-	-	-	1	50.2	1	5.7
11	노원구	8	119.7	5	55.3	-	-	-	-	6	97
12	은평구	39	579.1	22	186.6	12	244	6	24.7	-	-
13	서대문구	12	124.4	9	64.5	-	-	7	59.9	7	134
14	마포구	19	104.9	11	37	13	100.2	5	152.9	-	-
15	양천구	10	75.6	13	87.3	1	12.5	10	128.5	1	5.4
16	강서구	55	466.7	35	271.2	25	260.7	6	56	3	239.7
17	구로구	28	181.5	26	243.2	7	62.2	4	155.6	11	182.6
18	금천구	17	324.3	20	278.3	17	190	25	633.1	17	141.8
19	영등포구	12	77.8	30	312.6	-	-	29	186.3	17	213.8

20	동작구	1	86.4	-	-	1	10.3	2	34.2	1	1.6
21	관악구	38	157.7	37	282.7	8	29	8	70.5	11	125.9
22	서초구	3	14.6	-	-	-	-	10	671.9	2	8.1
23	강남구	30	169.7	28	166.6	10	35.4	34	232.7	32	111.5
24	송파구	10	66.4	38	386.8	7	298.5	6	83.7	3	28.6
25	강동구	11	90.2	6	242.4	1	5.2	4	123.4	1	73.20

■ 주요골자별 검토의견

가. 물순환 범위를 유출지하수까지 확대

(안 제8조제2항4호, 제9조제1항, 제36조, 제36조제1호 ~ 제3호, 제37조, 제37조제2호, 제37조제4호)

- 먼저, 안 제8조제2항제4호는 저영향개발³⁾ 계획의 포함 사항⁴⁾에 현행의 빗물관리와 관련한 사항뿐만 아니라 추가로 “유출지하수 발생 시 유출지하수의 처리 또는 이용·함양을 위한 계획”을 포함토록 하려는 것으로,

[표 3]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8조제2항4호)

현행	개정안
제8조(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① (생략) ② 저영향개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① (현행과 같음) ② ----- -----.

- 3)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
3. - 6. (생략)
- 4)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제8조(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① (생략)
② 저영향개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 목적, 필요성, 배경 및 절차 등 사업의 일반현황
2. 사업대상지의 빗물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관리시설의 제원, 수량, 상세도면 및 배치계획도
3. 빗물분담량을 사업대상지에 적용한 빗물관리대책량 및 적용 근거
③ - ④ (생략)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유출지하수 발생시 유출지하수의 처리 또는 이용·함양을 위한 계획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 현행 지표수 중심의 저영향개발 설계가 유출지하수까지 확장됨에 따라 빗물관리 정책과 지하수 관리 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해지고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유출지하수 활용 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물의 재이용 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서울시 물순환 정책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사료됨.
- 다음으로, 안 제9조제1항은 현행 본문 내용 중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를 “제8조제2항의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여”로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표 4]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허가권자는 <u>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u> 물순환 관리 주관부서에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단, 건축연면적의 변경, 10퍼센트이내의 건축면적 변경(증축·개축·재축을 포함한다)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없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① ----- ----- ----- 제8조제2항의 저영향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내용의 범위가 안 제8조제2항에 따라 ‘빗물’에서 ‘유출지하수’로 확장됨으로써 포괄적인 저영향개발 계획을 통해 사전협의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 하겠음.

- 마지막으로, 안 제36조 본문, 안 제36조제1호에서 제3호, 안 제37조 본문, 안 제37조제2호 및 안 제37조제4호는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 사항 중 연구·개발의 촉진, 홍보 및 교육 부문에 “유출지하수의 관리 및 이용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표 5]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36조 본문, 안 제36조제1호에서 제3호, 안 제37조 본문, 안 제37조제2호, 안 제37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36조(연구·개발의 촉진) 시장은 <u>빗물관리시설</u> 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연구·개발의 촉진) ----- <u>빗물·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u> ----- ----- -----.
1. <u>빗물관리시설</u> 시범설치 및 보급 촉진 사업	1. <u>빗물관리시설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u> ---
2. <u>빗물관리</u> 교육·홍보자료 개발	2. <u>빗물·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u> ----- ----
3. 그 밖에 <u>빗물관리</u> 촉진 등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3. ----- <u>빗물·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u> ----- -----
제3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u>빗물관리시설의 중요성</u> 을 인식시키고 <u>빗물관리시설의 설치</u> 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홍보 및 교육) ----- <u>빗물·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의 중요성</u> 을 ----- <u>빗물관리시설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u> 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빗물관리의 중요성</u>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2. <u>빗물·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의 중요성</u> 과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위원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u>빗물관리</u> 홍보 에 대한 지원	4. ----- <u>빗물·유출지하수</u> <u>관리 및 이용</u>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 조례 제1조(목적)⁵⁾에서 “개발로 인한 지하수의 유출을 최소화”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조례 제15조(지하수 함양)⁶⁾, 제16조(비점오염원 관리)⁷⁾, 제34조(재정지원)⁸⁾ 등에서 유출지하수의 이용, 함양, 지원에 대한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현행 조례 취지에 부합하는 대상 범위 확장이라 할 것인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나. 기타 용어 정비 등(안 제2조제4호)

- 안 제2조제4호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불투수층”을 “불투수면”으로 용어를 일치시키는 한편, 띄어쓰기 등의 문언정비를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 5)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정책기본법」, 「지하수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빗물의 자연 침투능력을 보전하고, 빗물의 표면유출 억제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며, 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하수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순환 회복과 물환경 보전을 위한 저영향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6)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제15조(지하수의 함양) 시장은 지하수 함양을 통한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빗물침투 및 유출지하수를 통한 지하수 함양이 효율적인 지역을 선정하여 지하수 함양 촉진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 7)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제16조(비점오염원의 관리) 「물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또는 한강 또는 지천 등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빗물처리시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등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 8)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제3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빗물관리시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 ④ (생략)

[표 6] 신·구조문 대비표(안 제2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불투수층(不透水層)”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4. “불투수면(不透水面)”이란 ----- ----- 눈 녹은 ----- ----- -----.
5. · 6. (생략)	5. · 6. (현행과 같음)